

### 【 3 】 양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·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08. 3. .

제출자 : 양주시장

#### □ 제안이유

- 자율적인 봉사정신으로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에 앞장서고 있는 관내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,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방범대가 애향심과 공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방범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협력 방범체제를 구축하고자 함

#### □ 주요골자

##### 가. 본 조례의 목적 및 주민자율방범대의 임무 규정.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
양주시 소속 자율방범대의 설립취지와 활동 내용에 대해 규정함

##### 나. 방범대의 등록절차 규정함.(안 제3조)

신설 방범대 설립의 경우 등록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시에서는 임무 적합성여부를 검토하여 등록하고, 향후 관리 및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함

##### 다. 방범대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4조 및 5조)

방범대 활동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대원의 자격을 규정하며 파렴치 전파자 및 생활 문란자에 대하여는 방범대원 선임을 제한함

##### 라. 방범대원의 활동범위, 지원 및 제한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 내지 8조)

방범대원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를 규정하고 활동실적에 따라 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및 차량, 안전장비, 사기진작 경비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하여 연중 활동 실적과 지도 점검결과를 반영해야 함을 규정하였고, 1년간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명시함

##### 마. 조례에 정하는 이외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함(안 제9조)

양주시 조례 제 호

## 양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‘자원봉사활동기본법’ 제4조 규정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에 관한 활동 등 주로 야간시간에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양주시 소재 주민자율방범대(이하 “방범대”라 한다)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임무)**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취약 지역 범죄예방·순찰 및 범죄 신고
2.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
3.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
4. 경찰 업무 협조 지원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

**제3조(설립)** ①신설 방범대를 설립·운영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 서식에 의한 “주민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”를 해당 읍면동 사무소를 경유하여 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는 3~4개 이상의 아파트가 연합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 사회단체로 결성되어 시의예산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 적합성 여부를 검토·확인하여야 한다.

③시장은 등록 신청사항이 적합한 경우 별지6호 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 및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“자율방범대원증”을 교부 한다.

**제4조(방범대원의 자격)** 방범대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

1.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지역주민 또는 지역에서 신망을 받는 자
2. 범죄예방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자

**제5조(결격사유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율방범 대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.

1. 파렴치 전과자 및 생활이 문란한 자
2. 기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자

**제6조(활동범위)** ①방범대의 활동범위는 초소가 위치한 해당 리·통의 행정구역 및 소속 파출소(치안센터) 관할 구역으로 하며, 특별한 경우 타 지역까지 순찰 할 수 있다. 단, 단일 아파트로 구성된 리·통의 경우 3~4개 이상의 리·통을 활동 범위로 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의한 활동 범위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7조(지원)** ①시장은 원활한 자율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초소 운영비, 출동비, 피복비, 장비 구입비, 야식비, 차량 지원 및 교체
  2. 대원 개인의 안전을 위한 안전 장비
  3. 방범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간담회(사례 발표회 포함), 대원의식 교육 등
  4. 시의 시책을 대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
-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 실적 및 지도 점검 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지원의 중단)** 시장은 방범대중 1년간 활동이 전혀 없거나 실적이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.

**제9조(운영 및 지원규정)**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기존 방범대의 등록 경과조치) 이 조례 공포이전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율 방범대는 본 조례에 의하여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소관 실·과		총 무 과
일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총무과장 이진규
	당 직위·성명	시정담당 강수현
	당 당 자 성명·전화	백수봉(☎2145)

[별지 제1호서식]

주민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					처리기간 10일
설립자	① 성명	한글		② 주민등록 번호	
	한자				
신청내용	③ 주소				
	④ 명칭				
	⑤ 목적				
	⑥ 초소 위치	(전화 : )			
	⑦ 총 인원				
	⑧ 시설 · 설비				
⑨ 설립연월일					
<p>'양주시주민자율방범대운영·지원에관한조례'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율방범대 설립·운영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(설립자)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양주시장 귀하</b></p>					
구비서류	1. 운영현황 1부 2. 방범대원 명단 1부 3. 활동계획 1부 4. 근무조 편성표 1부 5. 방범대원 반명함판(3×5) 사진 (개인별 2매)				

[별지 제3호서식]

## 주민자율방범대 대원 명단

[별지 제4호서식]

### 주민자율방범대 활동계획

연번	읍면동명	방범대명	대원수	근무주기	활동시간	활동계획							비고
						월	화	수	목	금	토	일	

[별지 제5호서식]

## 주민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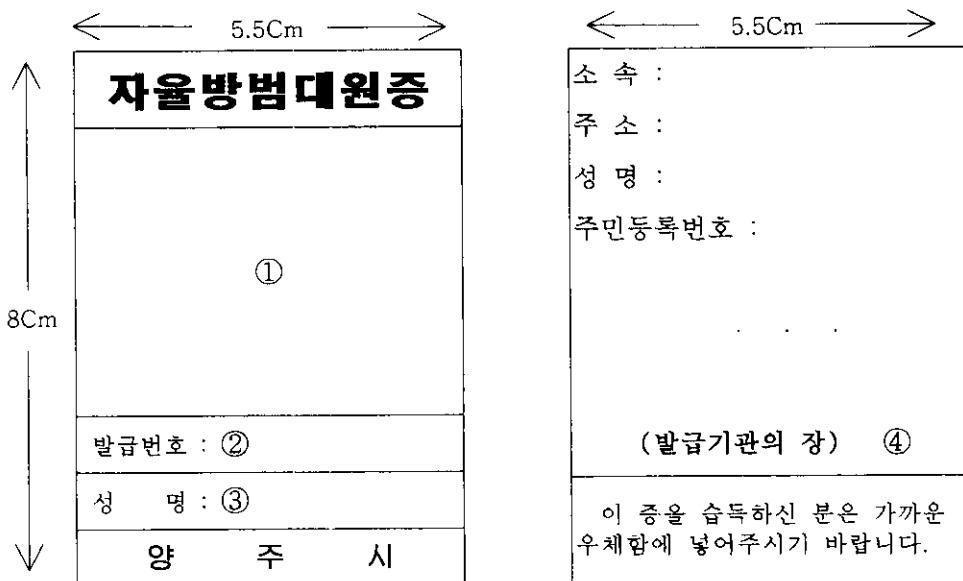
구분	근무조장 (핸드폰)	근무조원				비고
제1근무조						
제2근무조						
제3근무조						
제4근무조						
제5근무조						
제6근무조						

[별지 제6호서식]

## 주민자율방범대 등록대장

[별자 제7호서식]

## 주 민 자 율 방 범 대 원 증



○ 신분증 규격

- 가로 : 5Cm
- 세로 : 8Cm
- 바탕 : 하늘색

- ① 사진 (5Cm × 3Cm)
- ② 방범대원증 발급번호
- ③ 성명기재
- ④ 발급기관의 장 및 직인